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안

의안번호	241
------	-----

제출년월일 : '94. 8. 8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 정 이 유

지방자치법 개정(94. 3. 16) 및 동법시행령 개정(94. 7. 6)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 지급(안 제3조)
-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안 제4조)
-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심의결과 구청장이 보상금 지급결정하여 지급(안 제7조)
-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구성(안 제9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제2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 3 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준한다.

제 4 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 5 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6 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 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 7 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 8 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 9 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하구의회 의원중 1인
2. 사하구 본청 관련 실·과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부산직할시사하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접 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처리기간 15일
보상대상의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청구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				전화번호
	청구내용	☐ 사망 ☐ 장애 ☐ 상해				
	보상금 수령 금융기관		은행 지점	계좌 번호		
상병장소				상병년월 일		
상병원인및 발생상황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호적등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 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의 위임장(대리인 경우) 3. 청구인의 통장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장 (직인) 부산직할시사하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접 수	제 호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처리기간
						즉 시
보상대상의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보 상 금 청 구 내 용		☐ 사망 ☐ 장애 ☐ 상해				
사망, 장애,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		<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인 사하구청장 귀하						